

##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탈상품화 대 탈노동화\*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1. 문제제기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는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289만 원)을 지급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실시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국민투표는 반대 77%로 부결되었지만, 투표 참가자의 23%가 기본소득에 찬성표를 던졌다(오마이뉴스, 2016).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한화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Annala, 2016).<sup>1)</sup>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일간지는 기사, 사설, 칼럼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기사와 주장을 싣고 있다. 더욱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前)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22일 경제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는 내수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했다(국민일보, 2016). 현재의 분위기라면 2017년 대선을

\* 본 글은 아직 완성된 글이 아닙니다.

1) 보편적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의 실험이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진영을 고무시키고 있지만, 핀란드의 기획은 한국사회의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복지확대로 인해 위협받는 국가재정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이다(Tiessalo, 2016). 핀란드 사회보건부 장관은 “기본소득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기본소득이 노동 동기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기본소득이 ‘무조건성’에 기초한 기본소득이 아닌 워크페어와 유사한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 중 누군가는 기본소득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어느 날 갑자기 제도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은 보수정부 하에서 막대한 지출을 수반하는 “보편적 보육료지원”이 도입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일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많은 논자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빈곤의 확대는 전통적인 복지체제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제도화된 복지체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고용과 관계없는 기본소득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매우 매력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제도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이제 막 복지확대를 시작한 한국 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분석했다. 먼저 이론적 논의에서는 자본주의 분배체제로서 복지국가가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경제, 정치, 분배체제의 측면에서 검토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특성을 검토한 후 좌우 진영의 논의와 이러한 논의가 갖는 한계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서 복지국가를 형성해가고 있는 한국복지체제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에 대해 검토했다.

## 2. 이론적 논의: 복지국가의 위기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퍼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전후 자본주의 분배체제로 구축된 복지국가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하는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이후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론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역사적 성격으로부터 시작해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는 전후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경제, 정치, 분배체제 차원에서 검토했다.

### 1) 역사적 복지국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생산체제는 그에 걸맞은 분배체제를 제도화했다. 자본주의 생산체제 또한 그 자신의 생산체제에 조응하는 분배체제로 복지체제를 구축했다. 복지체제는 인간 노동력의 전면적인 상품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분배체제라는 점에서 자

본주의 이전 분배체계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에 두고 자본주의 분배체계로서 복지국가를 정의해보자. 먼저 자본주의를 역사적 자본주의로 정의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시작과 끝이 있는 생산체제인 동시에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를 이렇게 이해하면 자본주의 역사 전체에 보편적으로 조응하는 ‘유일한’ 분배체계로서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시기마다 각각의 시기에 조응하는 분배체계를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복지국가의 모습은 제1차 세계대전과 1929-39년 대공황과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북서유럽과 북미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Derlugian, 1999: 177-8). 이 시기는 미국이 영국을 대신해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패권국으로 등장한 시기이다. 미국은 비자본가 계급을 포섭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수립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구축한 상품의 자유 교역과 자본의 통제라는 경제 질서(브렌튼우드와 GATT 체제), 국민국가, 탈식민주의, 냉전체제라는 국제관계에 기초해 형성된 자본주의 분배체계였다.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미국 패권 질서의 황금시대(팍스 아메리카나)와 일치하고, 복지국가의 위기 또한, 미국 패권 질서의 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이다. 또한 미국 패권의 시대는 산업자본주의가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시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분배체계로서 복지국가는 미국 패권 시기 산업자본주의 체제의 특수한 시기의 산물인 “역사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들 복지국가는 개별 국민국가 내의 권력자원, 생산체제의 성격, 제도적 유산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 2)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의 시작

왜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는 끝이 났을까? 인플레이션은 전후 사반세기에 이르는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965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면서 군비지출이 급증하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나타났다(Heilbronre and Milberg, 2010: 381).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연평균 1%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지수는 베트남전쟁 개입 직후부터 상승했다(Inflationdata.com, 2015). 더욱이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조치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상승압력을 받고 있던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폈다. 황금시대 20년(1950-1969) 동안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2.1%였던 것에 비해 1970년대에 들어서면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7.3%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제품가격을 올려 이윤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가격상승과 함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Heilbronre and Millberg, 2010: 380-5).

실업률도 높아졌다.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1973년 3.1%에서 1983년 8.2%로 높아졌다(OECD, 2016a; Infopleac, 2016). 일본과 북유럽의 소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들 또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불구하고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주도했던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경제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전후 혼합경제를 주도했던 케인스주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절충(trade off)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국가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일 수도, 정부지출을 늘려 실업률을 낮출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밀턴 프리드먼도, 보수주의자였던 너슨도 1960년대에는 모두가 케인스주의자였다(Barro, 2004: 132).

왜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시작처럼 종말의 원인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고,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에 안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국가는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황금시대의 종말은 전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야기되기 때문이다. 먼저 생산성 하락에 주목해야 한다(Heilbroner and Millberg, 2010).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자본주의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했다. 실제로 1950년부터 1973년까지 노동자 1인당 연평균 생산량은 3%씩 증가했지만 1974년 이후에는 1.3%로 낮아졌다.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에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Johnston, 2012) 감소했지만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했다(Julius, 1988). 더 심각한 문제는 투자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는 미래에 자본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에 크게 의존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급등하자 미래 이윤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민간 투자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79년 8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Paul Volcker)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수십 차례 인상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21.5%로 높였다(FedPrimeRate.com, 1996). 가장 큰 기업도 이러한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는 없었다(Heilbroner and Millberg, 2010: 388). 성장과 고용을 희생시켜 인플레이션을 낮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왜 자본주의가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장기침체에 접어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로버트 브레너(Brenner, 2002)는 1970년대에 나타난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종말에 대해 경청할만한 설명을 제시했다. 핵심은 전후 산업을 재건한 서유럽과 일본의 성장에 더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장이 과잉설비와 과잉성장을 낳았고 이것이 장기침체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것이다(Brenner, 2002: 53-4).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은 제조업 이윤의 하락을 가져왔다. 선진 7개국의 제조업 이윤율은 1973년 21.9%에서 1980년 12.3%로 무려 43.8% 급감했다. 이러한 자본의 이윤을 저하에 대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실질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대응했다. 미국

은 전후 자본주의 체계의 핵심 함의였던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도(브레턴우즈 체제)를 파기해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다(Brenner, 2002; Armstrong, Glyn, and Harrison, 1993: 307-8).

〈표 1〉 실질임금 증가율과 실질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의 변화

	실질임금 증가율 (1인당)		실질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GDP 대비 %)	
	1961-73	1974-85	1965-75	1975-80
미국	2.7	0.7	6.5	2.0
일본	7.6	1.7	4.8	2.0
독일	5.5	1.4	8.5	8.2
EU-12	5.7	1.4	-	-
G7	-	-	7.6	4.2

출처: OECD. (1985). OECD. (1988). Brenner. (2002).

1970년대 유효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각국 정부의 케인스주의 정책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실행되었고, 한계생산기업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의 과잉생산과 과잉설비 문제를 지속시켰다(Brenner, 2002: 72-3). 대규모 한계기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의 수요 진작 정책은 산출물의 확대에 나타나지 않았다.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된 수요 보조정책 확대는 생산증가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유가폭등은 단지 이윤율 저하로 인해 퇴출에 직면했던 한계기업의 비용을 상승 시킴으로써 심각한 불황에 불을 붙인 것이다.<sup>2)</sup> 그렇다고 케인스주의 정책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케인스주의적 수요부양정책을 중단하자 심각한 불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1970년대의 상황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전환의 증후였고(Brenner, 2002: 73),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1970년대 후반 자본주의 세계에 찾아왔다.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의 대응은 케인스주의 없는 수요부양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반복했다. 2008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급격한 유가 상승이 반드시 불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953년과 1957년 수에즈 위기로 급격한 유가상승이 있었지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황금시대’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Hamilton, 2013).

### 3) 복지국가 권력관계의 위기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막을 내리는 징후는 전후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좌파의 위기를 동반했다. 첫 번째 위기의 진원은 사민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노동계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서유럽은 파업의 물결에 휩싸였다(Amstrong et al., 1993). 서유럽만이 아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파업은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양상도 이전과는 달랐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업장 단위의 살갱이 파업(wildcat strikes)이 파업의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독일 경우 살갱이 파업의 비율이 1949-1952년 46.7%에서 1969-1972년 94.7%로 높아졌다(Casutt, 2012: 26).

왜 갑자기 통제되지 않는 파업이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좌파 정치세력을 위기로 몰아간 것일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1960년대 후반부터 황금시대의 이익을 분배하는 계급(노동 대 자본) 간 합의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파업은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했다. 독일의 경우 1969-1972년간 발생한 파업 중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파업은 중앙노조가 주도한 파업의 0.2%, 살갱이 파업의 1.4%에 불과했다(Casutt, 2012). 여기에 지난 20년간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으로 인해 완전고용은 일반화되어 있었다. 산업예비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자의 교섭력이 높아졌다. 노동자의 이러한 요구는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종말을 재촉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은 지난 20년 간 황금시대가 구조화한 과잉생산과 과잉설비로 인해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결국,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은 전후 수정주의 좌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전통 마르크스주의 부활을 재촉했다.

두 번째 도전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월러스틴(Wallerstein, 1994: 116)이 1848년 세계혁명과 함께 또 하나의 세계혁명이라고 부르는 68혁명이 발생한 것이다. 급진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학생운동의 부활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믿었고, 미국 헤게모니 질서에 타협했던 수정주의자들을 공격했다. 학생운동은 서구의 모든 국가에서 좌파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Sassoon, 2014a: 771). 좌파정당들은 놀라고 당황했다(Wallerstein, 1994: 121-2). 신좌파로 불리는 새로운 집단은 제도권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자본주의의 이해에 운명을 같이함으로써 부패했고, 하위계층에 고통에 둔감하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수정주의)를 과신하는 오만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서구의 어떤 정당도 학생들이나 신좌파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Sassoon, 2014a: 796). 학생운동과 신좌파 또한 전후 자본주의를 대신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1960년대 후반에 부활한 마르크스주의도 대학이라는 지식인들의 제한된 공간을 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의 부활은 성별분업을 전제한 전후 자본주의 체제와 복지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좌파는 언제나 “계급이 첫째이고, 여자는 둘째”라고 주

장했다(Sassoon, 2014a: 825). 더욱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고등교육에 재학 중인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고,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업의 성장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서구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폭시켰다(Sassoon, 2014a: 848-9). 여성들은 미국 헤게모니가 만들어낸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여성성의 신화, 즉 가정주부의 지위를 거부하기 시작했다(Friedan, 1963). 이렇게 되자 성별분업에 의해 제도화되었던 전후 자본주의 체제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계급관계에 기초해 전개되었던 전통적 사회주의 운동의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사민주의 정당의 정치적 정당성도 약화되었다. 이제 사민주의 정당은 계급만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요구를 포함해 생태주의와 같은 다양한 급진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여성해방이 노동계급의 승리에 달려있다는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의 합의가 폐기된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즘 역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막을 내리면서 분명해진 것은 조직노동과 좌파는 급격히 쇠퇴해졌고, 우파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변화된 조건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했던 좌파와 ‘시장’이라는 분명한 대안을 손에 쥔 우파 간의 싸움에서 우파가 승리했고, 우리는 1980년대 이후 근 40년 가까이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봐야했다.

#### 4) 역사적 복지국가의 위기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종말을 고한 것과 달리 복지국가의 위기는 1970년대 말이 돼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축적의 위기는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완전고용을 위협했고, 복지지출에도 커다란 압력이 되었다. 보수 세력은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이 복지국가의 지나친 확대에 있다고 비난했다(Sassoon, 2014b:26). 노동조합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탐욕의 원흉으로 비난받았다. 복지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동시에 고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했지만,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가는 실업 확대를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에 몰두했다. 드디어 1945년 이후 30년 만에 시장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업수당과 같은 복지제도가 실업을 높이고,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힘을 얻어갔다(Sassoon, 2014b: 44).

그렇다고 모든 복지국가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위기로부터 복지국가의 대응방식이 분기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예상과 달리 미국은 사회지출의 확충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이러한 명목소득의 증가가 과세기준을 높임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킨 것이다(Esping-Andersen, 1990: 180-1).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전히 달러가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로 사용

되었고, 달러의 평가절하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위험을 독일, 일본 등으로 이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웨덴은 1970년대 위기 이후에도 완전고용에 기반 보편적 복지체제를 유지했지만, 선택지는 그리 넓지 않았다. 1976년은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사민당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부르주아정당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낮은 투자율, 높은 인플레이션, 임금압박, 낮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인해 부르주아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유일한 대안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초부터 대부분의 고용증가분은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일자리가 증가한 것의 결과였다(Rosen, 1997: 79). 하지만 재정적자를 대가로 유지된 완전고용은 분배를 둘러싼 계급갈등을 간신히 봉합하고, 문제를 뒤로 넘기는 전략이었다.

독일의 대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외국노동력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노동자들의 조기퇴직을 장려하며(Esping-Andersen, 1990:185-6), 마지막으로 통화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 조기퇴직 정책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다(황규성, 2011: 48-50). 고령 노동자가 퇴직한 자리에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1972년부터 35년 이상 장기가입자, 실업자 등은 65세 이전에 퇴직해도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60-65세 남성의 고용률은 1970년 75%에서 1981년 44%로 31%p나 낮아졌다(Esping-Andersen, 1990: 185). 하지만 경제위기로 고용창출이 어려워지자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짐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더 어렵게 했다(황규성, 2011: 48). 결과적으로 스웨덴과 같은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2002년 슈뢰더 정부에 의해 추진된 하르츠 개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이었다. 결국, 어떤 복지국가도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전후 복지국가의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재정적자를 통한 대응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었을 뿐이었다.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가 직면할 도전은 1945년 이후 복지국가가 마주한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고, 복지국가는 그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 3. 기본소득의 성격

자본주의의 위기와 이에 수반된 좌파의 위기는 결국 전후 자본주의와 좌파의 헤게모니하에 구축되었던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 복지국가의 위기가 거의 30년 이상 지속한 지금 우리는 그 위기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특성에 대해 검토했다. 기본소득의 특성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정치, 분배체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은 “정치단위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van Parijs, 2006: 7). 이 짧은 문장에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들이 잘 담겨 있다. 먼저 지급주체를 “정치단위”로 설정한 것은 기본소득이 국민국가 내의 각급 정부(중앙과 지역정부)는 물론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정치단위도 기본소득의 지급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단위가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은 기본소득의 재원이 공적재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두에게”의 의미는 기본소득이 인구학적 특성, 기여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정책도 보편적 정책이라고 분류하지만, 기본소득에서 보편성은 어떠한 선별성도 배제한다. 그것이 설령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급여라고 할지라도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선별적 급여인 것이다(윤홍식, 2011).

기본소득의 급여단위가 “개인단위”라는 것은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실질적 자유’의 실현 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국내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소득으로도 적절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급여액을 가구단위로 합산하는데 이는 기본소득의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강남훈, 2014: 299; 김교성, 2009:45). 즉, 기본소득이 지급수준의 “충분성”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개인단위’라는 의미에는 기본소득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에 대한 요구 없이”는 임금노동은 물론 사회적으로 유용한 무급노동에 대한 요구 또한 기본소득의 수급 자격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이러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이다. 말리브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비판 등은 모두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이다(Van Parijs, 2016[1995]).

특히 이러한 ‘무조건성’은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원리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면, 기본소득은 탈노동화(delaborization) 원리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탈상품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는 권리로써, 권리의 유무가 아닌 수준이 중요하다. 반면 탈노동화는 임금노동과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계를 갖지 않는다. 탈노동화는 탈상품화와 달리 수준이 아닌 유무가 핵심인 권리이다. 일부 논자가 기본소득을 탈상품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탈노동화 성격을 탈상품화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서정희·조광자, 2014: 132). 기본소득은 분배정책의 성격을 탈상품화에서 탈노동화로 전환하는 대안적 분배체계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 2) 소득보장유형에서 본 기본소득

이번에는 기본소득을 현재 소득보장정책과 비교해보자. 기본소득을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라는 두 축으로 비교하면 기본소득의 지위는 <표 2>와 같다. 좌측상단에 위치할수록 노동에 대한 요구와 선별성이 강하고, 우측하단에 위치할수록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강한 정책이다. 대체로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노동조건과 자산 및 소득조사가 엄격한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노동시장경력과 기여여부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상대적으로 보편적 사회수당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자유주의 체제에서 기본소득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좌측상단에서 우측하단으로 소득보장정책의 성격이 정반대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경우 이미 무조건성과 인구학적 특성으로만 선별하는 정책이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기본소득 체제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이들에게 기본소득의 실현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 노인, 청년 등에게 지급되던 사회수당을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표 2> 선별성과 노동조건을 통해 본 소득보장정책의 유형분리

		선별기준			
		자산·소득조사	기여여부	인구학적 특성	보편성
노동조건	임금노동	근로연계복지 <sup>A</sup> (EITC 등)		사회보험 <sup>B</sup>	
	사회활동	자활, 공공근로 등 <sup>A</sup>	공공부조 <sup>A</sup>	출산수당 양육수당	참여소득
	무조건성	부(負)의 소득세		사회수당 <sup>C</sup> 사회적 지원	기본소득

참고: A: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중심 소득보장제도, B: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중심 소득보장제도,

C: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중심 소득보장제도.

굵은 이탤릭체: 아직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대안적 소득보장정책.

하지만 이론적 논의와 달리 현실 세계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요구는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아닌 자유주의나 저개발국 복지체제에서 더 크다. 1980년대 이후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수준의 보편주의에 근접한 사민주의 체제는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다(Andersson, 2000; Christensen and Loftager, 2000). 이는 현실 세계에서 부분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사회수당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반면 기존 복지체제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제도의 필요성은 더 크다. 바르단(Bardhan, 2016)도 기본소득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유용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인도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식빈곤선의 75% 수준인 연간 10,000루피(한화 167,600원)를 지급할 경우 총비용은 GDP의 10%에 해당하는데, 이는 현재 인도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보다 작은 규모라는 것이다.<sup>3)</sup> 더욱이 기본소득은 사각지대가 없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소득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상원의 원이자 기본소득의 강력한 지지자인 에두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Suplicy)도 기본소득이 개발도상국가에 적절한 소득보장제도라고 주장한다(Suplicy, 2012). 실제로 공적 행정체계의 발달이 지체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경우 잔여적 정책보다는 보편적 정책이 빈곤과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Mkandawire, 2005). 더불어 아직 복지체제의 역사적 경로가 굳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할 국가의 경우도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기존 복지체제를 대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본소득으로 인한 매몰 비용 자체가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낮다. 즉 이들에게 기본소득은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문제인 것이다.

### 3) 현실 세계에서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한 제도일까? 국내 문헌들을 검토하면 마치 기본소득이 서구 복지국가든 물론 세계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보면 기본소득이 단순히 유토피아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기본소득의 원형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 알래스카 주가 유일하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실 논의에서는 매우 다양한 소득보장정책들이 기본소득으로 불리고 있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이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sup>4)</sup>

3) 이 수치에는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4) 보편성은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보편성A 자산소득조사 실시 여부를, 보편성B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별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권리성은 법제화되어 있을 경우 권리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정기성은 연간 또는 월간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적절성은 1인 가구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빈곤선을 넘으면 충족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표 3〉 기본소득과 다양한 소득보장정책

	보우샤 파밀리아 (브라질)	알래스카 영구기금 (미국)	나미비아 기본소득 (시험사업)	사회수당 (뉴질랜드 기초연금)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배당 (성남시)	핀란드 기본소득 (2017년 시험사업)	부의 소득세	참여소득	사회적 지분	기본소득 (2016년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안)
무조건성	●	●	●	●	▲	●	●	X	▲	●	●
보편성A	X	●	●	●	X	●	▲	X	X	●	●
보편성B	●	●	●	X	X	X	X	●	X	X	●
정기성	●	●	●	●	▲	▲	●	●	●	X	●
개인단위	X	●	●	●	●	●	●	X	●	●	●
적절성	▲	▲	▲	▲	▲	▲	●	▲	▲	●	●
지급주체	●	●	X	●	●	●	●	●	●	●	●
권리성	●	●	X	●	●	●	X	X	●	●	●
●:▲:X	5:1:2	7:1:0	5:1:2	6:1:1	3:2:2	5:2:1	5:1:2	3:1:4	4:2:2	6:0:2	8:0:0

참고: 보편성A: 자산 및 소득조사가 없는 경우. 보편성B: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별이 없는 경우. 정기성: 월, 년 단위. 지급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적절성: 1인 가구 빈곤선 또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 충족, ▲: 부분충족, X: 불충족

〈표 3〉의 맨 우측에 있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기본소득의 원칙과 비교했다. 먼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알래스카 영구기금(APF)은 거의 모든 조건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APF의 연간급여액은 미화 2,072달러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APFC, 2016). 하지만 2,072달러는 2015년 미국의 1인 가구의 공식 빈곤선인 \$11,700의 17.8%에 불과한 금액이다(U.S. DH HS, 2015). APF만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PF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는 기본소득의 대안적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참여소득이나 사회적 지분이 아니라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같은 사회수당이다.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과 불충분한 급여를 제외하고는 기본소득과 유사했다. 뉴질랜드는 독신 노인에게 월 평균 NZ\$ 886.86(중위소득의 36% 수준, 2016)의 기초연금(Superannuation)을 지급하는데, 이는 빈곤가구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위소득의 6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6; Statistics New Zealand, 2015). 브라질의 보우샤 파밀리아는 자산조사를 거치며,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점과 급여수준이 빈곤을 벗어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신재성, 2014).

나미비아에서 실험했던 기본소득은 극단적인 빈곤상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급주체(민간재단)와 권리성(시험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Kaufmann, 2010). 급여 또한 극빈수준(184.56 나미비아 달러)의 54.2%인 월 100 나미비아 달러로 노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핀란드에서 2017년에 시행할 시험사업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2,000명을 무작

위로 선발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급여수준(560유로, 한화 70만원) 또한 개인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Tiessalo, 2016).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급여수준 또한 모호하다. 부의 소득세는 기본소득의 원형 또는 유사한 정책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교 대상 정책 중 기본소득과 가장 관련이 없는 정책이다. 임금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연동되기 때문에 무조건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도 없고, 자산조사를 해 보편적이지도 않다. 또한 권리적 성격이 약한 것도 부의 소득세가 기본소득과 다른 점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청년수당은 자산조사를 하는 잔여적 제도이자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가장 거리가 먼 정책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개인단위, 지급주체, 권리성(서울시 청년수당 조례)이라는 3가지 요건에서만 기본소득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말이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잔여적 소득보장정책이다. 반면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무조건성, 자산조사 없는 급여, 정기성, 개인단위, 권리성(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시정부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로 지급되고(연간 50만 원), 24세의 청년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현실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국민국가는 없으며, 가장 유사한 정책으로는 알래스카 영구기금만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소득보장정책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과 대체관계에 있는 복지국가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다. 결국, 현실세계에서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탈노동화(delaborization)를 보장하는 분배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유사한 정책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 임금노동 없이는 개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정책의 아류일 뿐이다.

#### 4.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탈노동화 정책인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 이후 명백해진 사실 중 하나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불평등, 빈곤, 실업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니계수로 측정된 OECD 국가들의 불평등 지수는 1980년대 중반 0.264에서 2012년 0.315로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OECD, 2016a). 실업률도 2014년 현재 7.3%(OECD 평균)로 1970년대 이전 실업률(대략 2~3% 수준) 보다 대략 3~4배 가까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지난 35년간 복지국가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나타난 현상이라는데 있다.<sup>5)</sup> 기본소

득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이렇듯 현실 자본주의 분배체계로서 복지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시점도 자본주의 체제의 신자유주의 성격이 강화되고, 복지국가가 약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이다(Bardhan, 2013).<sup>6)</sup> 논의의 초점은 대안으로 등장한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맞추어져 있다.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논의와 주장을 검토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좌파, 우파, 기능적 접근이라는 세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검토했다.

### 1) 좌파진영에서 기본소득

좌파진영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본소득을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이다. 판 파레이스(van Parijs)와 판 더 빈(van der Veen)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van der Veen and van Parijs, 1986).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은 공산주의로 이행에서 반드시 사회주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기본소득의 실현을 통해 자본주의를 곧바로 공산주의로 이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만약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면, 공산주의는 될 수 있는 한 보편적 수당 형태의 소득보장을 높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공산주의는 각자의 몫이 각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일정한 절대적 수준에 이를 때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생산물이 각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분배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van der Veen and van Parijs, 1986: 664).

이러한 주장은 마르크스(Marx, 1995: 377)가 『고타강령초안비판』에서 제기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사회주의단계)에서 “불가피한 각자의 노동에 따른 분배”를 거쳐,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의 더 높은 단계로의 순차적 이행과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논쟁적인 주장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자에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반드시 사회·경제조직의 사회주의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Fitzpatrick, 1999: 133).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에릭 라이트(Erik O. Wright)와 조셉 카렌(Joseph H. Carens)에 의해 즉시 반박되었다(Wright,

5)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는 1980년 15.4%에서 2014년 현재 21.6%로 40.2% 증가했다(OECD, 2016a).

6) 예를 들어,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George McGovern)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보편적 수당형태(demogrant)의 기본소득을 검토했다(Bardhan, 2013).

1987: 666; Carens, 1987: 679). 이후 판 파레이스는 “공산주의” 대신 “기본소득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Fitzpatrick, 1999: 133).<sup>7)</sup> 독일과 오스트리아 좌파당 내 분파도 최저 임금제도와 결합한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연대경제라는 사회주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이끄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곽노완, 2008:165). 국내에서는 곽노완(2007, 2008)이 기본소득을 사회주의와 코뮌주의(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sup>8)</sup>

사민주의 진영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우호적인 입장은 기본소득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구(舊)사회주의 국가들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보다 현재 사회를 우월한 체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누구도 저임금으로 착취 받으면서 일할 필요도 없고, 강제로 가내노동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Jordan, 1987, Fitzpatrick, 1999: 131, 재인용; Jordan, 2008: 6). 더욱이 기본소득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노동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저임금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변화시켜, 노동자들의 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Wright, 2005; Fitzpatrick, 1999:132). 사민주의 진영의 논리는 기본소득이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관계에서 노동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자본주의를 노동계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수정주의의 출현 이래 자본주의 내에서 사회주의적 개혁을 실현하려는 사민주의자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은 사민당의 주류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민당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독일 사민당은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보완하는 개혁을 지지하며,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일종의 콤비임금이라고 비판한다(최승호, 2013:115-6; 이명현, 2014:27). 북유럽 사민당도 사민주의 복지체제를 대신하는 기본소득에 부정적이다. 스웨덴과 덴마크 사민당은 기본소득에 대해 전혀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Andersson, 2000: 226-7; Christensen and Loftager, 2000: 263). 2017년부터 중도우파 정부에서 의해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핀란드도 상황은 유사하다. 핀란드 사민당은 한 번도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Andersson, 2000: 231-233). 핀란드 사민당은 기본소득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핀란드 사회를 일하는 사람과 기본소득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분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노동조합도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노동조합은 복지국가가 완전고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7) 흥미로운 사실은 판 더 빈과 판 파레이스는 1986년에 발표한 논문과 같은 논문(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을 2006년 새로운 저널(Basic Income Research)에 다시 게재해 기본소득의 실현으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1986년 주장으로 되돌아갔다.

8) 곽노완은 공산주의(Communism)라는 용어대신 코뮌주의(Communism)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마도 한국의 반공주의 정서를 의식해 기본소득이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우회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사민당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구축한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북유럽 복지국가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연대에 기초해 구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민당으로서 북유럽 복지국가를 탈노동화한 분배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기본소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에도 사민당이 기본소득에 반대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민당이 북유럽 자본주의와 계급구조가 기본소득에 유리한 구조로 변화했다(한다)고 판단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사민당의 기본소득의 지지여부는 현재와 미래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 변화에 달려있다.

## 2) 우파진영에서 기본소득

좌·우파 모두 기본소득에 대한 합의는 없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우파진영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복지국가를 대신해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배체제라고 믿는다. 이들의 논거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기본소득은 시장 임금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Fitzpatrick, 1999: 84). 기본소득이 로트(Roth)의 비판과 같이 일종의 콤비임금(Kombilohn)으로 기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자본의 이윤은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Blaschke, 2009: 304). 좌파진영에서 기본소득을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상반된 해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성격이다. 만약 기본소득이 탈노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급된다면 좌파진영의 주장처럼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겠지만, 기본소득이 생활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기본소득은 콤비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본소득이 미국식 노동시장 유연화를 실현하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Fitzpatrick, 1999: 85). 기본소득이 미국식 노동시장 유연화와 유럽식 사회보호제도를 결합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논거는 도덕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가족구조의 형태에 중립적이기 때문이다(Fitzpatrick, 1999: 86).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의 오래된 비판 중 하나가 바로 복지국가의 관대한 지원이 가족체제를 조장한다는 것이었다(Murray, 1984). 그런데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더 받기 위해 굳이 이혼, 별거 등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논거는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복잡한 급여구조를 단순화시킴으로써 국가개입과 복지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파진영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 모형의 대부분이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독일 기업가 베르너(Werner)는 연금, 실업급여, 주택수당



등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해 행정비용을 줄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곽노완, 2007: 200-1).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학자인 찰스 머레이(Charles Murray)도 연방정부가 매년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빈곤감소, 보건의료, 연금 등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연간 13,000 달러의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면서도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Murray, 2016:1, 11). 2014년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연간 2,120억 달러의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 2020년이 되면 그 규모가 9,31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머레이와 베르너의 차이는 머레이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도 기본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베르너의 기본소득 구상에는 이러한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머레이의 구상은 현행 복지급여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우파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복지 담당 공무원과 공공사업을 줄여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다(경향신문, 2012). 하시모토 구상의 특징은 기존의 현금급여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복지 행정비용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비용을 줄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우파진영의 공식적인 대응은 없다. 다만 중도우파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김종인은 전통적인 케인스주의에 따라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우파진영에게 기본소득은 완전고용을 대신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국가기능을 축소하는 핵심 도구로 상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파진영은 전후 케인스주의 자본주의에 조용하는 분배체계로서 복지국가를 유산을 완전히 해체하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조용하는 새로운 신자유주의 분배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여러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우파진영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 3) 보완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세 번째 관점은 기본소득을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정책의 하나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사회복지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을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새로운 탈상품화 정책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서정희·조광자, 2014).<sup>9)</sup> 핵심논거는 완전고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완전고용을 전제한 전통적 탈상품화 방식의 사회보장정책으로는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할 수 없으므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보장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제도화했을 경우 빈곤율이 몇 % 감소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거나(김교성, 2009), 여러 가지 기본소득 모델

9) 최근 기능주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논자 중 일부는 기본소득을 1970년 중반이후 변화된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에 조용하는 사회정책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김교성, 2016).

중 어떤 모델이 불평등 감소에 더 효과적인지 등을 분석했다(백승호, 2010).

이러한 국내의 기능주의적 논의는 서구 복지집산주의자들의 입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서구 복지집산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기본소득이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와 달리 사각지대 없이 모든 사람을 탈상품화 제도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Fitzpatrick, 1999: 112). 하지만 국내 기능주의적 논의가 서구 집산주의자와 같이 기본소득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Fitzpatrick, 1999: 112-3). 오히려 국내 기능주의적 접근은 기본소득을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고용형태에 적용하는 새로운 탈상품화 전략으로 이해하는 오페(Offe, 2009)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자의 접근방식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 4) 대안적 분배체계로서 기본소득 논의의 한계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분배체계의 기획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본소득은 누가 어떤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어떤 수준으로 제기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정치경제적 의미가 있게 된다. 한국에서 일부 논자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진보를, 반대가 보수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별주의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지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현재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대신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기본소득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이유로 복지국가 위기의 근원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전후 구축된 복지국가가 전후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에 기초해 형성된 역사적 복지국가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곧 전후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경제적 위기로 설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안 또한 변화된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경제적 성격에 조응하는 새로운 분배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실제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기본소득을 대안적 분배체계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와 분배체계로서 기본소득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전후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의 생산물이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전후 공적 사회서비스지출 증가율은 생산성 증가율보다 50% 이상, 현금급여의 증가율은 생산성 증가율 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높았다(Amstrong et. al., 1993: 192-9). 정부지출의 증가가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지속시킨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고, 이렇게 지속된 황금시대는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를 지속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소득이 현재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해야 한다.

앙드레 고르(André Gorz)는 “기계가 일하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일하지 않을 시대가 왔다”는 마르크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생산의 문제에 의존하지 않고, 분배의 문제만 의식하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했다(Gorz, 2011: 228). 하지만 그 생산이 어떤 것이든 간에 생산이 지속되지 않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고, 역사상 생산과 무관한 분배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자본의 확대 재생산은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이기 때문에 생산의 감소와 중단이 자본의 확대 재생산의 중단을 의미한다면 이는 곧 자본주의의 몰락을 의미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생산과 관계없는 ‘기본소득’이라는 분배체제를 구축하고도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주체가 누구인지 답해야 한다. 현재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 복지국가를 지지하고 지켜나갈 정치세력으로서 시민당과 조직노동이 정치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연대를 통해 구축된 분배체제인 것처럼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분배체제 또한 어떤 권력자원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현재 기본소득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핵심 정치세력인 시민당이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1968년 이후 새로운 좌파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녹색당, 일부 좌파정당, 중도(우파)정당, 자유주의 정당, 자본가계급과 보수정치인이 지지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최승호, 2013; Andersson, 2000; Christensen and Loftager, 2000). 문제는 이들 지지집단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르고, 누가 주체가 되어, 누구를 동원하고, 누구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세력화할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노동은 기본소득이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전통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복지급여를 노동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조직된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경력과 연동되지 않는 기본소득을 지지한다(최광은, 2011: 136). 특히 복지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핵심제도인) 사회보험 등에 안정적인 기여를 할 수 없는 프레카리아트(Prekariat)라는 불안정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은 대안적 사회보장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험과 같은 복지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기여금을 낼 수 있는 노동계급은 급격히 감소했다. 칸디아스(Candeias)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독일인 중 75%가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 등이 반복되는 비연속적인 고용경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노완, 2013: 97). 물론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핵심 권력자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프레카리아트

가 동질적 정체성을 갖는 단일한 정치세력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하고 못 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노동계급의 존재 자체가 신화이지만 복지국가 역사에서 노동계급의 세력화는 고용과 연계된 전후 복지국가의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20세기 접어들면서 사민당을 포함해 대부분의 정당이 국민정당화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기반을 특정 계급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접근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이 대안적 분배체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민주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주체’는 반드시 필요하다.<sup>10)</sup> 일회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해 기본소득이 제도화될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면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부 기본소득 지지자는 기본소득은 제도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으로 인해 상위 1%를 제외한 99% 모두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을 확장하고 지켜나갈 분명한 정치세력이 없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을 지지할 새로운 주체와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중심이 되는 분배체계가 어떤 점에서 현재 복유립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체제수준의 보편적 복지체제 보다 우월한 분배체계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판 빠레이스의 주장과 달리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스웨덴식 복지체제와 기본소득 체제를 동시에 제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van Parijs, 2016; Bergmann, 2010).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기 이전까지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은 한 번도 사회정책의 핵심 의제가 된 적이 없다.

대신 일부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당장 복지국가를 대신하는 완전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 대신 특정 인구집단에만 지급되는 사회수당이나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Groot and van der Veen, 2000). 하지만 특정 인구집단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기본소득은 현재 복지국가에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 또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초기 형태로 이미 제2차 대전 이후 영국과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현된 역사가 있다. 현재 보편적 복지국가는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가 중간계급의 이해에 조응하지 못해 시장의 역할이 확대되는 문제를 야기하자 1950년대 말부터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Eley, 2008: 582). 그런데 다시 낮

10) 물론 조직된 주체라는 것이 반드시 노동조합과 같은 경성권력자원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 네트워크 방식의 느슨한 연대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기본소득이 단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노동과 복지 간의 관계를 단절하는 새로운 분배체계라면, 이러한 분배체제와 이해를 지속적으로 같이하는 지속가능한 조직된 주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 수준의 보편적 정액급여 방식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거슬러 올라가자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기본소득의 제도적 우월성을 공공부조(또는 잔여적 정책)와 비교해 찾는 것도(강남훈, 2016), 체제수준의 보편주의와 정책수준의 보편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복지국가를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을 전제한 역사적인 복지국가”로 전제하는 것도(곽노완, 2014: 344) 적절하지 않다.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은 왜 기본소득이 중심이 되는 분배체계가 체제수준의 보편주의 보다 더 우월한 분배체계인지를 경제적, 정치적, 분배체계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기본소득과 한국복지체제에 대해 검토해보자.

## 5. 기본소득과 한국복지체제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분배체계인지 아닌지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분배체계를 만들어갈 권력자원에 대한 진단,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초래할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변화를 다루었다.

### 1) 한국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한국경제는 앞서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내수와 투자가 불균형적인 과잉설비와 과잉투자가 지속되었다. 실제로 OECD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민간소비는 GDP 대비 53.4%로 OECD 국가 중 21위였는데 반해 GDP 대비 총 고정자본형성은 32.0%로 1위를 기록했다(김상조, 2012: 71).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GDP 대비 최종 가구지출 비율은 2011년 49.2%에서 2015년 47.1%로 감소했다(OECD, 2016b). 물론 민간소비 비중이 작다는 것이 곧 불평등과 빈곤을 확산시키는 것은 아니다. 북유럽처럼 GDP 대비 높은 수준의 사회서비스 지출로 국민의 부족한 구매력을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1)</sup>

협소한 내수역량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과 취약한 국가복지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수출중심의 대기업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의 연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주도의 성장이 한

11) 2014년을 기준으로 스웨덴과 덴마크의 GDP 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은 각각 16.1%(현금 12.1%)와 15.8%(현금 14.3%)로 OECD 최고의 수준이다(OECD, 2016c).

국 사회 내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보다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김상조, 2012: 105). 실제로 자본집약적인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의한 성장이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무관해지면서 성장을 해도 불평등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핵심지표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여년 가까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이병희, 2015:36-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성 격차 또한 2011년 기준으로 비교 대상 56개국 중 51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석현·김군수·이재광, 2012: 2).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실현될 수 없다.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한국의 지위는 일본에서 수입한 자본재를 가공해 직접 또는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김상조, 2012: 87). 물론 한국이 선진 자본주의와 경쟁하는 부문도 있지만, 한국 자본주의 전체를 보았을 때 선진 자본주의와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한국 자본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자본주의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화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추진동력이 내부에서 국제통화기금으로 대표되는 외부로 전환되었다(김상조, 2012: 36-7).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이해에 따라 지속된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화가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화는 복지국가가 성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신자유주의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이후 소득, 자산,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 증가도 바로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전병유 편, 2016).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면 왜 기본소득이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가 양산한 결과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분배체계와 경제체계 간의 관계가 (경제체계가 분배체계를 결정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면 기본소득 중심의 분배체계가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와 어떤 전망을 공유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야 한다. 단순히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급여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보장체제를 대신해 노동과 무관한 기본소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은 현상에 대한 대증적 처방은 될 수 있는지만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기본소득을 이렇게 대증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본소득의 체제 전환적 성격은 사라지고, 기본소득은 그저 돈 많이 드는 관대한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가 될 뿐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어쩌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좌파의 대안 담론으로 제기된 인지

자본주의가 그 대답의 실마리를 내재하고 있다. 인지자본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생산물을 물질에서 찾지 않고 ‘인지’ 또는 ‘정보’라는 생산물에서 찾고 있으며, 생산관계 또한 임금노동자와 자본이라는 특정한 계급간의 생산관계가 아닌 자본과 집단지성에 의한 생산에서 찾고 있다(조정환, 2011; Hardt and Negri, 2001; 이명현, 2014: 61). 생산이 더는 개인의 임금노동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지성이라는 형태로 사회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 노동과 연계된 분배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무조건 보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분배체계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은 이윤확보를 위해 더는 노동계급을 포섭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요강』에서 부의 창조가 노동시간이 아닌 기술진보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사회의 필요노동시간은 최소한으로 단축되고, 개인은 자유롭게 예술, 과학, 교양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Marx, 2000[1857/8]: 380-1). 「고타강령초안비판」에서도 마르크스는 다시 노동이 부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Marx, 1995[1891]: 370). 직접적인 노동이 더는 부의 원칙이 되지 않는 사회의 도래를 예견한 것이다.

실제로 다음, 네이버, 구글 등이 창출하는 부는 “직접적인 형태의 노동”이 아닌 전 세계에서 이들을 사용하는 셀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생산과 분배의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적인 부의 창출 형태라면, 노동과 연계된 복지체제의 해체는 필연적이고, 노동과 무관한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체제의 도래는 (그 실현 여부는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지지자는 단지 현대 자본주의의 높은 생산력의 발달수준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뿐이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과 무관한 분배체제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의 현상적인 모습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기본소득은 이러한 수준에서 제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체제를 대다수 시민이 받아들인다면 이런 분배체제가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서구에서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생태주의자가 주목할 만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정치에서 당분간 이들이 우리 시대를 주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기본소득과 관련해 한국사회의 권력자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2) 한국 복지체제의 권력자원과 기본소득

전후 서구 자본주의의 분배체계로 구축된 역사적 복지국가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연대에 기초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연대의 약화가 복지국가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체제 구축과 관련해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누가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체제를 구축할 핵심 권력자인가? 물론 권력자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한다.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조직된 산업노동자는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권력자원이었지만, 후기 산업자본주의에서도 산업노동자가 복지체제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구조와 이 둘 간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정당정치와 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발전시켰듯이, 기본소득 중심의 분배체제를 발전시킬 지지계급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셸리브(Shalev, 1983: 323)의 지적처럼 “거의 모두가 동의하듯 의회 사회주의의 강도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복지국가 발전에 더 중요하다.”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체제는 어떤 계급(집단)의 문제이고, 어떤 계급의 정치적 기획인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은 복지국가가 더는 완전고용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16년 3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43.6%가 비정규직이고, 근속연수의 중위 값이 2년 밖에 되지 않은 등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한국에서(김유선, 2016), 기여와 연동된 사회보장체제는 대다수 임금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 익숙한 수치이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의 경우 32.4%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건강보험(직장)도 40.4%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어쩌면 현재 한국 복지체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그 주체는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고,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또는 프레카리아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이 2016년 3월 현재 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김유선, 2016: 31). 2%의 조직률로 기존의 복지체제를 대신하는 기본소득 중심의 분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유력 정당 중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도 없다. 녹색당이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녹색당의 득표율은 지역구 기준으로 0.1%, 비례대표 기준으로 0.76%에 불과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무의미한 수치이다.

설령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화되고, 이를 대표하는 어떤 정당이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당장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제조업 노동자가 그랬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권자 전체로 보면 여전히 소수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핵심 계급으로서 비정규직은 자신과 함께할 연대 대상을 찾아야 한다. 과거 조직노동과 같이 그 대상이 중간계급일지, 영세자영업자들일지, 누가 기본소득 중심의 새로운 분배체제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강남훈(2016: 2)의 주장처럼 단순히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을 비교해 기본소득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치적 연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정치적 지



지의 문제를 경제적 동인으로 단순화한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저소득층이 자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진영은 단순히 기본소득이 현재 한국 복지체제가 야기하는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진영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할 정치세력을 누구이며,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른 이해집단과 연대해 지지기반을 확장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 집단이 새로운 분배체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이해를 위해 권력자원을 행사하는 즉자적 계급을 넘어 대자적 계급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의 지적처럼 기본소득과 밀접한 이해를 갖고 있는 프레카리아트는 아직 대자적 계급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다(Standing, 2014[2011]: 23).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계급이 그랬던 것처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치집단도 본래부터 존재했던 그 무엇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서 구성되어 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한 당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주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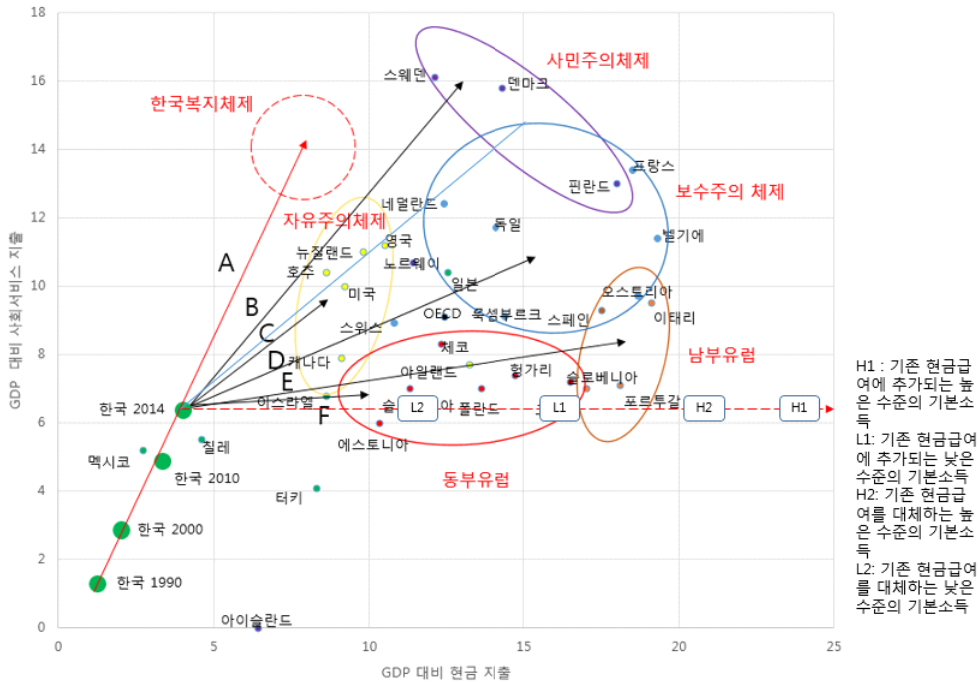
### 3)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체제화

만약 기본소득이 제도화된다면 한국 복지체제는 어떤 모습일까? 현재 기본소득논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소득의 제도화는 한국복지체제의 성격을 동유럽 또는 남유럽 복지체제보다 더 현금 중심적인 체제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강남훈(2014: 282, 292)이 추계한 대로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현금급여가 추가로 대략 305조 정도가 늘어나고,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179조 정도가 확대된다.<sup>12)</sup> 먼저 기본소득이 기존의 현금급여를 대체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지출은 GDP 대비 대략 30%수준이 되고, 현물과 현금지출의 비율은 대략 6% 대 24%가 되어 한국은 <그림 1>에서 [H1]에 위치해 OECD 국가 중 가장 극단적인 현금중심의 복지체제가 된다.<sup>13)</sup>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L1]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또한 현물과 현금의 구성비율이 6% 대 16%가 되어 그리스, 슬로베니아와 유사한 지출구조를 갖는다.

12) 높은 수준은 39세까지 연간 400만원, 40~54세까지 600만 원, 55세 이후 800만 원으로 설계되어 있다. 낮은 수준은 연령과 관계없이 연간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강남훈(2014)의 추계는 2012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2014년을 기준으로 작성되면 실제 기본소득의 명목규모는 더 커진다. 그러므로 현재 추정된 GDP 대비 현금지출 비율은 다소 과소추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1,485조원 규모이다(통계청, 2016).

〈그림 1〉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한국복지체제의 사회지출수준 및 구성변화: OECD 국가들의 지출구성 비교 (2014년)



자료: OECD. (2016).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다음으로 기본소득이 기존의 현금급여를 완전히 대체할 경우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현물과 현금지출구조가 6% 대 21% 되어 한국은 [H2]에 위치하게 된다. 이 또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현금지출구조를 갖는 복지체제이다. ‘낮은 수준’의 경우는 현물 대 현금구성이 6% 대 12%가 되어 한국의 지출구조는 [L2]에 위치해 현재 슬로바키아와 아일랜드와 유사한 지출구조를 갖게 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제기한 녹색당의 기본소득 1단계 안을 적용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녹색당의 1단계 기본소득 안이 실현 되면 현금지출 증가분은 (기초연금 대체분을 제외한) 95.1조 원(GDP 대비 대략 6%수준)으로 GDP 대비 현금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4%에서 10%로 높아진다(녹색당, 2016). 한국의 현금급여 대 서비스급여의 지출구조는 10:6으로 2014년 에스토니아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공적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확대가 없는 한 어떤 수준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한국 복지체제는 동유럽과 남유럽 복지체제와 같은 현금 중심형 복지체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북유럽형 복지체제와 남유럽형 복지체제의 가장 큰 차이가 공적 사회서비스의 규모와 관련되고, 현금 중심의 남유럽 복지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에서 한국 복지체제를 남유럽형 또는 더 극단적인 현금중심체제로 가져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 기본소득과 함께 공적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면 GDP 대비 사회지출은 30%를 넘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이 핀란드 복지국가를 사회서비스 중심 복지체제에서 현금급여(재분배) 중심의 복지체제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Andersson, 2000: 232).

물론 한국에서 현금급여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핵심은 현물과 현금급여의 균형적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고, 기본소득 또한 현재 복지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구상될 필요가 있다. 현실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한국복지체제의 지출수준을 GDP 대비 20%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GDP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은 현재 6%에서 11%로, 현금 급여는 현재 4%에서 9%로 확대하는 수준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현재 뉴질랜드와 호주의 GDP 대비 사회지출구성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GDP 대비 사회지출수준을 30%까지 확대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수준이 된다면 공적 사회서비스는 현재보다 대략 9%포인트, 현금 급여는 11%포인트 확대하는 수준에서 사회지출구조가 형성된다면 현물과 현금 급여가 균형을 이루는 복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현금급여규모는 기존의 현금급여를 기본소득이 모두 대체했을 경우로 강남훈(2014)이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라고 언급한 규모가 된다. 결국 한국복지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의 규모는 현재 현금급여를 기본소득이 모두 대체한다는 전제하에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소득을 이러한 수준으로 도입했을 때 판 빠레이스(van Parijs, 2016)가 이야기하는 “실질적 자유”는 보장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탈노동화’를 실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체제를 보완하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은 보편적 사회수당의 성격의 탈상품화 정책이 된다.

## 6. 정리 및 결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이론, 가치, 철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한편의 논문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기본소득에 내재된 체제 변혁적인 동력을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기본소득을 자본주의, 권력자원,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조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현재 복지국가가 처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과 그 목적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우리는 기

본소득이 진보와 보수 등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분배체계의 기획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평등, 빈곤, 불안정한 고용은 복지국가 위기의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라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진영은 불평등, 빈곤, 불안정 고용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써 기본소득을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는 않는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이 된 역사를 알지 못한다. 1960년대 후반 소위 ‘68혁명’이 전후 질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지만, 기존질서에 균열을 내는 것 이외에 68혁명은 어떠한 실현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우리는 시장이라는 분명한 대안을 가진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권력을 내줘야 했다. 기본소득이 또 다시 신자유주의 체제의 기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써 기획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은 사실상 기본소득의 핵심원리인 ‘탈노동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낮은 수준 또는 인구학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수당 형식의 기본소득은 탈노동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탈상품화 정책이 아닌 탈노동화 정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다. 더불어 탈노동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왜 현재와 미래 한국 자본주의에 조응하는 분배체제인지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만약 한국 복지체제가 기본소득을 제도화했을 경우 한국 복지체제가 매우 현금중심적인 복지체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누구도 한국 복지체제에서 현금급여를 확대해야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복지체제를 현금중심의 복지체제로 가져가자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고 있듯이 현금 중심 복지체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극단적인 현금 중심의 복지체제로 가야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한국 분배체제에서 현금과 서비스 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누구의 정치적 힘과 기획에 의해 제도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전망도 제시해야한다. 분배체제로서 복지국가가 그랬듯이 기본소득과 같이 기존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새로운 분배체제의 출현은 강력한 권력자원의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강남훈. (2014). “2012년 기준 기본소득 모델들과 조세개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편,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pp. 280-325. 경기도 고양시: 박종철출판사.

- 강남훈. (2014).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진보평론』, 45: 12-43.
- 강남훈. (2016).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 복지국가연구회 9월 월례회의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수석관. 2016년 9월 9일.
- 경향신문. (2012). “일본 유력 총리후보 ‘기본소득제’공약” 2012년 2월 14일자. 출처: <http://news.khan.co.kr> 접근일: 2016. 8. 28.
- 곽노완. (2007).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18(2): 183-218.
- 곽노완. (2008). “대안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 독일과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5(4): 154-184
- 곽노완. (2013). “노동의 재구성 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프레카리아트의 계급 형성과 진화에 필수적인가?”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94-114.
- 곽노완. (2014). “복지국가의 선별복지에서 기본소득의 보편복지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편,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pp. 342-365. 경기도 고양시: 박종철출판사.
- 국민일보. (2016). “더민주 김종인 경제 민주화 없인 포용 성장 난망, 기본소득제 도입 고려할 때 됐다.” 2016년 8월 22일자. 출처: <http://news.kmib.co.kr>. 접근일. 2016. 8. 24.
- 김교성. (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3-57.
- 김교성. (2016).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2016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6년 4월 29일~30일,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2전시장.
- 김상조. (2012). 『중형무진 한국경제: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서울: 오마이북.
- 김유선. (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6.3) 결과.” 『KLSI Issue Paper』, 2016년 4호.
- 녹색당. (2016).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 서울시: 녹색당.
-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185-212.
- 서정희·조광자. (2014).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편,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pp. 121-145. 경기도 고양시: 박종철출판사.
- 신재성. (2014). “브라질의 사회정책과 시민기본소득의 전망” 강남훈·곽노완 외 지음,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pp. 218-238. 경기도 고양시: 박종철출판사.
- 오마이뉴스. (2016). “아빠, 왜 내 기본소득으로 술 마셔요?” 오마이뉴스, 2016년 8월 5일자. 출처: <http://www.ohmynews.com> 접근일: 2016. 8. 27.
-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한국사회복지학』, 63(2): 57-79.
- 이명현. (2014).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논쟁과 전략의 탐색』.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이병희. (2015).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118: 25-42.
- 전병유 편. (2016). 『한국의 불평등 2016』. 서울: 페이퍼로드.
- 조정환. (2011). 『인지자본주의』. 서울: 갈무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수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광은. (2011).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경기도 고양시: 박종철출판사.
- 최석현·김군수·이재광. (2012).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이슈 & 진단』, 73: 1-25.
- 최승호. (2013). “독일의 기본소득보장 모델 연구: 근로의욕 고취인가, 보장성 강화인가?” 『한·독사회과학논총』, 23(1): 91-122.
- 통계청. (2016).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GDP). 출처: <http://www.index.go.kr> 접근일: 2016. 9. 5.
- 황규성. (2011).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서울: 후마니타스.
- Armstrong, P, Glyn, A. and Harrison, J. (1993[1991]).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김수행 옮김 (Capitalism since 1945). 서울: 동아출판사.
- Andersson, J. (2000). “The history of an idea: Why did basic income thrill the Finns, but not the Swedes?” In van der Veen, R. and Groot, L. (eds.), *Basic income on the agenda*, pp. 224-237.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 Annala, M. (2016). “Thousands to receive basic income in Finland, Demos Helsinki, August 30, 2016. <http://www.demoshelsinki.fi/en> 접근일: 2016. 9. 1.
- APFC. (2016). The permanent fund dividend. 출처: <http://www.apfc.org/home/Content/dividend/dividend.cfm> 접근일: 2016. 9. 4.
- Blaschke, R. (2009[2006]). “당신의 목표는 임금노예의 노예?” 김원태 옮김 (Sklaverei der Lohnarbeit als Ziel?), 『진보평론』, 39: 298-319.
- Bardhan, P. (2013). “Inequality, Inefficiency, and the Challenges for Social Democracy in India’s economic transition.” In S. Khinlani and M. Malhoutra (Eds.), *An Indian social democracy*. New Delhi: Academic Foundation.
- Barro, R. (2004). “Milton Friedman: Perspectives, particularly on monetary policy.” *Cato Journal*, 27(2): 127-134.
- Bergmann, B. (2010[2006]). “스웨덴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무엇이 우선인가?”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Redesigning distribution), pp. 195-211. 서울: 나눔의 집.
- Brenner, R. (2002). 『봄 앤 버블: 호황 그 이후, 세계 경제의 그늘과 미래』. 정성진 옮김 (The

- boom and the bubble). 서울: 아침이슬.
- Carens, J. (1987). "The virtues of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15(5): 679-687.
- Casutt, J. (2012). "The influence of business cycles on strike activity in Austria, Germany and Switzerland." In Velden, S. ed., *Striking numbers*, pp. 13-58.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 Christensen, E. and Loftager, J. (2000). "Ups and downs of basic income in Denmark." In van der Veen, R. and Groot, L. (eds.), *Basic income on the agenda*. pp. 257-267.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 Derlugian, G. (1999[1996]). "국가의 사회적 응집력." 『이행의 시대: 세계체계의 궤적, 1945-2025』. 백승욱·김영아 옮김, (The age of transition: Trajectory of the world-system, 1945-2025), pp. 176-215. 서울: 창작과 비평사.
- Eley, G. (2008[2002]). 『The left 1848~2000』. 유강은 옮김, (Forging democracy: The history of the left in Europe, 1850-2000). 서울: 뿌리와 이파리.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 FedPrimeRate.com. (1996). Prime Interest Rate History. 출처: [http://www.fedprimerate.com/wall\\_street\\_journal\\_prime\\_rate\\_history.htm](http://www.fedprimerate.com/wall_street_journal_prime_rate_history.htm) 접근일. 2016. 9. 6.
-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Macmillan Press Ltd.
- Friedan, B. (1963). *The feminine mystiqu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Gorz, A. (2011[1980]).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사회주의를 넘어서』. 이현웅 옮김, (Adieux au prolétariat). 경기도 파주시: 생각의 나무.
- Groot, L. and van der Veen, R. (2000). "How attractive is a basic income for European welfare states?" In van der Veen, R. and Groot, L. (eds.), *Basic income on the agenda: Policy objectives and political changes*, pp. 13-38.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 Hamilton, J. (2013). Historical oil shocks. Parker, R. and Whaples, R. eds., *Routledge handbook of major events in economic history*, pp. 239-274. New York, NY: Routledge.
- Hardt, M. and Negri, A. (2001[2000]). 『제국』. 윤수중 옮김 (Empire). 서울: 이학사.
- Heilbroner, R. and Millberg, W. (2010[2007]).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홍기빈 옮김 (The making of economic society). 서울: 미지북스
- Inflationdata.com. (2015). Total Inflation Rate by Decade(Cumulative Inflation by Decade Since 1913). 출처. <http://inflationdata.com> 접근일. 2016. 8. 13.
- Infoplease. (2016). United States unemployment rate. 출처: <http://www.infoplease.com/ipa/A0104719.html>.

- Johnston, L. (2012). "History lessons: Understanding the decline in manufacturing" Minpost Feb. 22, 2012. 출처: <https://www.minnpost.com>
- Jordan, B. (2008). "Basic income and social value." 12th Basic Income Earth Network(BIEN) Congress, 20-21 June 2008. University College Dublin, Ireland. 출처: <http://basicincome.org/research/> 접근일. 2016. 8. 31.
- Jordan, B. (1987). *Rethinking Welfare*. Oxford: Blackwell.
- Julius, D. (1998). "Inflation and growth in a service economy."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38:338-46.
- Kaufmann, J. (2010). "BIG hopes, big questions: Namibia's basic income grant." *The Journal of Civil Society and Social Transformation*, 1: 38-48.
- Marx, K. (1995[1891]). "고타 강령 초안 비판" 이수훈 옮김, 박종철출판사 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pp. 233-390. 경기도 고양시: 박종철출판사.
- Marx, K. (2000[1857/8]). 『정치경제학 비판요강 II』. 김호균 옮김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서울: 그린비.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16). *New Zealand Superannuation*. 출처: <http://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index.html> 접근일: 2016. 9. 4.
- Mkandawire, T. (2005). Targeting and universalism in poverty reduction.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Programme Paper Number 23 Dec. 2005*. UNRISD.
- Murray, C. (1984).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New York: Basic Books.
- Murray, C. (2016). *In our hands: A plan to replace the welfare state*. Washington, DC: The AEI Press.
- OECD (2016a), *OECD Factbook 2015-2016*. Paris: OECD Publishing.
- OECD. (1985). *Social expenditures, 1960-89*. Paris: OECD.
- OECD. (1988).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Paris: OECD.
- OECD. (2016a). *Labour Force Statistics*. 출처: <http://stats.oecd.org> 접근일: 2016. 2. 12.
- OECD. (2016b). *National accounts*.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 접근일. 2016. 9. 5.
- OECD. (2016c). *OECD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접근일. 2016. 9. 5.
- Offe, C. (2009). "Basic income and the labor contract." *Analyse & Kritik*, 31(1): 49-79.
- Project Syndicate. (2016). *Could a basic income help poor countries?* Project-Syndicate, The world's opinion page. 2016년 6월 22일자. <https://www.project-syndicate.org> 접근일: 2016. 8. 27.



- Rosen, S. (1997). "Public employment, taxes, and the welfare state in Sweden." In R. Freeman, R. Topel, and B. Swedeno (Eds.), *The welfare in transition: Reforming the Swedish model*, (pp. 79-108).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ssoon, D. (2014[2014]a) 『사회주의 100년, 1: 20세기 서유럽좌파 정당의 흥망성쇠』. 강주헌·김민수·강순이·정미현·김보은 옮김(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West European left in the twentieth century, 2014 ed.). 서울: 황소걸음
- Sassoon, D. (2014[2014]b) 『사회주의 100년, 2: 20세기 서유럽좌파 정당의 흥망성쇠』. 강주헌·김민수·강순이·정미현·김보은 옮김(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West European left in the twentieth century, 2014 ed.). 서울: 황소걸음, p. 26.
- Shalev, M. (1983). "The Social Democratic Model and Beyond: Two 'Generations'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Welfare State." *Comparative Social Research*, 6:315-51.
- Standing, G. (2014[2010]).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옮김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경기도 고양시: 박종철출판사.
- Statistics New Zealand. (2015). *New Zealand Income survey 2015*. [http://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income-and-work/Income/NZIncomeSurvey\\_HOTJun15qtr.aspx](http://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income-and-work/Income/NZIncomeSurvey_HOTJun15qtr.aspx) 접근일: 2016. 9. 4.
- Suplicy, E. (2012). "The best income transfer program for moder economies." In Caputo, R. ed.,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n the viability of income guarantee*, pp. 41-5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Tiessalo, R. (2016). "Finland tests giving every citizen a universal basic income." *Independent*, Friday 26 August 2016. 출처: <http://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universal-basic-income-finland-ubi-test-scheme-experiment-a7211241.html> 접근일: 2016. 8. 29.
- U.S. Department of Heath and Human Services, (2015). *2015 Poverty guidelines*. 출처: <https://aspe.hhs.gov/2015-poverty-guidelines#thresholds> 접근일: 2016. 9. 4.
- Van der Veen, R. and Van Parijs, P. (1986).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Theory and Society*, 15(5): 635-655.
- Van Parijs, P. (2006).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Ackerman, B., Alstott, A., and van Parjs, P. (eds.),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 pp. 7-38. New York: Verso.
- Van Parijs, P. (2016[1995]).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조현진 옮김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서울: 후마니타스.
- Van Parijs, P. (2016). "Basic income and social democracy." *Social Europe*, April 11<sup>th</sup> 2016. 출처:

<https://www.socialeurope.eu/> 접근일. 2016. 9. 6.

Wallerstein, I. (1994[1989]). 『반체제운동』. 송철순·천지현 옮김 (Antisystemic movements). 서울: 창작과비평사.

Wright, E. (1987). “Why something like socialism is necessary for the transition to something like communism.” *Theory and Society*, 15(5): 657-672.

Wright, E. (2005). “Basic income as a socialist project”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gress of the U.S. Basic Income Guarantee Network, March 4-6, 2005. New York City.